

# 『전북영화기획개발지원』 사업 모집공고

구 분		전북영화기획개발지원
사업명		- 전북영화기획개발지원
신청 대상		- 지역공모 : 장편극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 가능성이 높은 트리트먼트 - 전국공모 : 장편극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
신청 자격		- 지역공모 : 지원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거주자 ※ 지원일 기준 전주영화학교 기획개발지원 프로젝트는 대상 제외 - 전국공모 : 극장개봉장편영화의 크레딧 1편 이상 보유 ※ 극장개봉장편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전국 최소 7개관 이상의 극장에서 개봉 또는 7회차 이상 상영한 경우에만 인정함. - 공통신청자격 ※ 저작권 및 법적논란의 소지가 없는 작품 ※ 지원일 기준 1년 내 전주영상위원회 기획개발 사업 선정대상자 또는 프로젝트로 전국 타 기관 유사 기획개발 사업 선정 및 타 시나리오 공모전에 입상이나 시상한 프로젝트는 대상제외
지원조건		- 공통 지원 조건 : 2021년 2월 內 최종 시나리오 제출 - 지역공모 : 사업화(영화제작)시 20% 이상 전라북도 촬영 가능한 프로젝트 사업화(영화제작)시 전체 제작진의 20% 이상 전라북도 지역인이어야 함. - 전국공모 : 사업화(영화제작)시 20% 이상 전라북도 촬영 가능한 프로젝트
지원 규모	지원 편수	- 총 6편 내외 (지역공모 2편, 전국공모 4편) 내외 ※ 지원편수 및 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
	편당 지원 금액	- 지역공모 : 일천만원(2편) - 전국공모 : 삼천만원(1편), 이천만원(1편), 천오백만원(2편)
지원신청		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jjfclt@naver.com) ※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, 접수 마감일 이메일 접수 시간 도착분에 한함. - 접수 마감일 및 접수 시간 : 2020.12.18.(금) 16:00까지 - 제출방법 : 압축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제출(필수) 전북영화기획개발지원(지역)_작품제목.zip, 전북영화기획개발지원(전국)_작품제목.zip - 신청서류 : 사업공고 참조

○ 안내 및 문의

- 사)전주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 ☎ 063-903-0421

# 『전북영화기획개발지원』 사업 모집공고

## [지역공모 부분]

- 신청대상 : 장편극 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투자 및 제작 완성 가능성이 높은 트리트먼트
- 신청 작품분량 : 60 ~ 100분 내외
- 신청조건
  - 사업화(영화제작)시 전라북도 내 촬영비율(20%)을 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
  - 사업화(영화제작)시 전체 스태프의 20% 이상 전라북도 지역인이어야 함.
- 신청자격
  - ※ 저작권 및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작품
  - ※ 지원일 기준 1년 내 전주영상위원회 기획개발 사업 선정대상자 또는 프로젝트로 전국 타 기관 유사 기획개발사업 선정 및 타 시나리오 공모전에 입상이나 시상한 프로젝트는 대상 제외
  - ※ 지원일 기준 전주영화학교 기획개발지원 프로젝트는 대상 제외

구 분			지 원 자 격
지역 공모	개인 신청	프로듀서/작가/감독	신청인은 반드시 상기 지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 (지원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거주자)

- 지원편수 : 2편
- 지원내용

지원 부분		지원 편수 및 지원금	비고
전북영화 기획개발	지역공모	2편 (편당 10,000천원/일천만원)	

## ○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
### 1. 접수기간

- 지역공모 : 2020.11.26.(목) ~ 2020.12.18.(금) 16:00까지

※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

### 2. 접수방법

- 온라인 접수 : e-mail 접수([jjfclt@naver.com](mailto:jjfclt@naver.com))

※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, 접수 마감일 및 위원회 접수 시간 16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

- 제출서류 목록 (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, 아래 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 형태 미준수 시 심사대상 제외)

지원 부분		제출서류	비고
전북영화 기획개발	지역 공모	<p><b>사업신청서 1부</b> (위원회 제공양식 준수,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신청서 참여인력에 본명 기재 필수(필명 있을 시 별도 표시)</li> <li>예) 홍길동(필명: 황비 홍)</li> <li>◦ 참여 인력정보 작성 시 시나리오 집필 수행자, 필수기재(집필 수행자 없을 시 신청 불가)</li> <li>◦ 프로젝트참여 동의서,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,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, 성범죄·성희롱 사실 확인서, 성범죄·성희롱 예방서약서 날인 필수</li> <li>※ 프로젝트참여 동의서, 성범죄·성희롱 사실 확인서, 성범죄·성희롱 예방서약서는 인원별 각 1부 작성</li> </ul> <p><b>기획안 및 트리트먼트 1부</b> (위원회 제공양식 준수,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획안 : 위원회 제공 약식 준수</li> <li>◦ 트리트먼트 : 위원회 제공양식 준수</li> <li>- A4 25매 이상 30매 이내</li> <li>(200자 원고지 환산 시 120매 이상), (분량 미준수 시 심사대상 제외)</li> <li>- 제출형식: PDF, 휴먼명조, 11pt, 여백(좌/우) 20mm, 여백(위/아래) 12mm, 머리/꼬리말 10mm, 줄 간격 160%, 장평 100%, 자간 0%</li> </ul> <p>※ 본문 내 프로젝트 제목, 대표신청인 및 참여 인력의 인력정보 발견 시 탈락조치</p>	

3. 신청방법: 압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제출(필수)

- 전북영화기획개발 지원(지역)\_작품제목.zip

4. 접수 시 주의사항

- 트리트먼트, 시나리오 등에 응모자 개인정보(이름, 연락처, 필명 등) 삽입 금지

- 서명(도장)이 포함된 경우 스캔하여 첨부(사진 촬영 불가) 하며, 서명 없을 경우 신청 취소로 간주함.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, 수정, 교환 중복 제출 불가

- 미비 서류에 대해서 별도 안내 없이 서류 심사 제외

**[전국공모 부분]**

- 신청대상 : 장편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투자 및 제작 완성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
- 신청 작품분량 : 90 ~ 120분 내외
- 신청조건 : 사업화(영화제작) 시 전라북도 내 촬영비율(20%)을 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
- 신청자격
- ※ 저작권 및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작품
- ※ 공고일 기준 1년 내 전주영상위원회 기획개발 사업 선정대상자 또는 프로젝트로 전국 타 기관 유사 기획개발사업 선정 및 타 시나리오 공모전에 입상이나 시상한 프로젝트는 대상제외

구 분		지 원 자 격
전국 공모	팀 신청 (2인 이상 신청)	프로듀서/작가/감독 중 2인 이상인 경우  대표신청인은 반드시 상기 지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 프로듀서: 극장개봉 장편영화의 제작 또는 프로듀서 크레딧 1편 이상 보유 작가: 극장개봉 장편영화의 각본 크레딧 1편 이상 보유 감독: 극장개봉 장편영화의 연출 크레딧 1편 이상 보유 ☞ 팀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(극장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)
	제작사 신청	프로듀서/작가/감독 중 2인 이상인 경우  제작사 대표(대표신청인)는 반드시 상기 지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 ☞ 대표신청인은 반드시 제작사 대표여야 함. (극장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)

※ 극장개봉 장편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전국 최소 7개 관 이상의 극장에서 개봉 또는 7회차 이상 상영한 경우에만 인정함.

- 지원편수 : 4편
- 지원내용

지원 부분		단계별 지원 편수 및 지원금	비고
전북영화 기획개발	전국공모	4편 / 삼천만원(1편), 이천만원(1편), 천오백만원(2편)	

○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
1. 접수기간

- 전국공모 : 2020.11.26.(목) ~ 2020.12.18.(금) 16:00까지

※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

2. 접수방법

- 온라인 접수 : e-mail 접수([jjfclt@naver.com](mailto:jjfclt@naver.com))

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, 접수 마감일 및 위원회 접수시간 16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

- 제출서류 목록 (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, 아래 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 형태 미준수 시 심사대상 제외)

지원 부분		제출서류	비고
전북영화 기획개발	전국 공모	<p><b>사업신청서 1부</b> (위원회 제공양식 준수,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신청서 참여 인력에 본명 기재 필수(필명 있을 시 별도 표시)</li> <li>예) 홍길동(필명: 홍로드리고)</li> <li>◦ 참여 인력정보 작성 시 시나리오 집필 수행자, 필수기재(집필 수행자 없을시 신청 불가)</li> <li>◦ 프로젝트참여 동의서,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,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, 성범죄·성희롱 사실 확인서, 성범죄·성희롱 예방서약서 날인 필수</li> <li>※ 프로젝트참여 동의서, 성범죄·성희롱 사실 확인서, 성범죄·성희롱 예방서약서는 인원별 각 1부 작성</li> </ul> <p><b>기획안 및 시나리오 1부</b> (위원회 제공양식 준수,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획안 : 위원회 제공 약식 준수</li> <li>◦ 시나리오 : 위원회 제공양식 준수</li> <li>- A4 50매 이상 (200자 원고지 환산 시 300매 이상)(분량 미준수 시 심사대상 제외)</li> <li>- 제출형식: PDF, 휴면명조, 11pt, 여백(좌/우) 20mm, 여백(위/아래) 12mm, 머리/꼬리말 10mm, 줄 간격 160%, 장평 100%, 자간 0%</li> </ul> <p>※ 본문 내 프로젝트 제목, 대표신청인 및 참여 인력의 인력정보 발견 시 탈락조치</p>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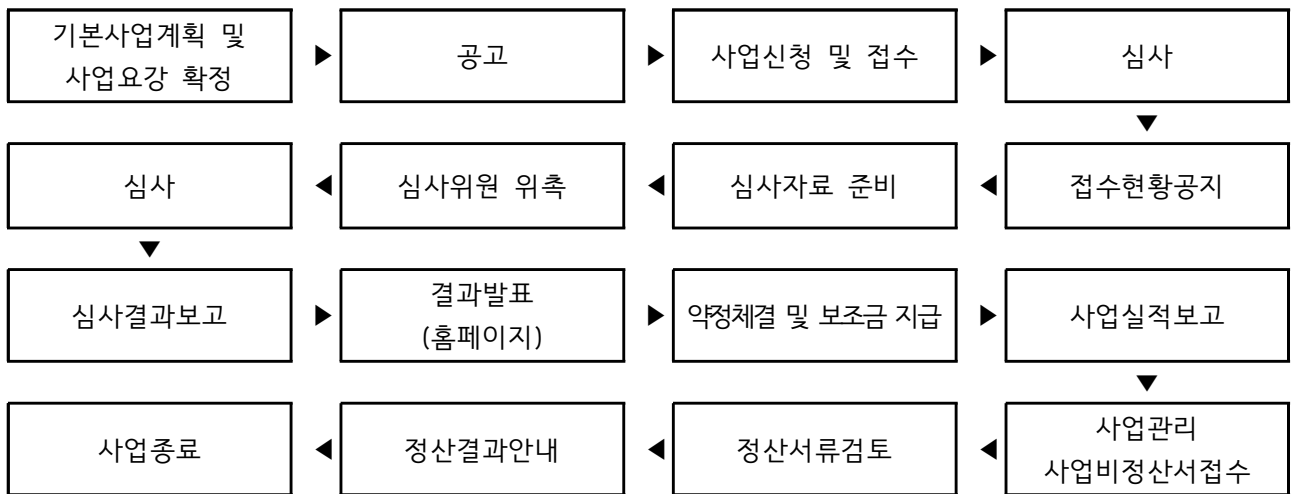
3. 신청방법: 압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제출(필수)

- 전북영화기획개발 지원(전국)\_작품제목.zip

4. 접수 시 주의사항

- 트리트먼트, 시나리오 등에 응모자 개인정보(이름, 연락처, 필명 등)삽입 금지
- 서명(도장)이 포함된 경우 스캔하여 첨부(사진촬영불가)하며, 서명 없을 경우 신청 취소로 간주함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, 수정, 교환 중복 제출불가
- 미비서류에 대해서 별도 안내 없이 서류 심사제외

○ 지원 절차



○ 선정절차

1.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

-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
2. 심사 및 최종선정

-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작품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후보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회부하여 확정

3. 선정기준

-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, 프로젝트의 완성도 및 작품성, 프로젝트의 발전가능성 등

4. 선정방식

- 예심, 본심 심사를 통해 기획개발 지원 대상자 선정
  - ※ 지역, 전국 동일 선정방식
- 심사진행 시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 발표일 변동 될 수도 있음.

5. 재공고

- 심사진행 작품 중 비교대상의 작품이 없을 경우 재공고함.
- 심사진행 시 접수 작품의 완성도가 낮은 경우, 지원 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6. 선정결과 안내

-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  - ※ 신청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선정

○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

- 본 지원(보조)금은 전액 참여구성원의 인건비 집행
- 지원(보조)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.

단, 보조금 지급 후 자진포기 또는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 조치 있음.

- 선정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체결

시 지원결정을 취소함.

- 신청인은 보조금의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획개발을 진행하여야 하며, 사업신청 후 신청인 변경은 불가함.

○ 의무사항

지원 부분		결과물	비고
전북영화 기획개발	지역공모	-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및 시나리오 초고 이상 1부(A4 50매 이상 200자원고지 환산 시 300매 이상), 시놉시스 및 인물구성표 1부를 제출하여야함.	
	전국공모	-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및 시나리오 2고 이상 1부(A4 50매 이상 200자원고지 환산 시 300매 이상), 시놉시스 및 인물구성표 1부를 제출하여야함.	

- 선정자는 사업(영화제작)화 시 오프닝과 엔딩크레디트에 사업 명 및 전주영상위원회, 전라북도 심벌 로고 삽입



- 사업화(영화제작)시 전라북도 내 촬영비율(20%)을 엄수
- 사업화(영화제작)시 전체 스태프의 20% 이상 전라북도 지역인 이어야 함.(지역공모 한함.)

○ 신청제외 대상

-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신청자의 작품
- 지원 신청편수는 신청인 프로젝트 1편 이내로 함.

※ 참여인력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는 경우에도 제외함.

- 제 3자의 명의로 제출한 프로젝트
- 신청일 현재 작품의 저작권을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작품
- 표절작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한 작품
- 단편/중편 등 이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장편극영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작품
- 동 사업 혹은 타 위원회 기획개발지원관련 보조사업(기획개발지원, 트리트먼트개발지원, 시나리오 사업화지원, 애니메이션 초기기획지원, 지역영화기획개발지원, 한국영화 시나리오공모전 등)진행 중인 선정대상자 (참여인력포함)
-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있는 선정자
- 여타 기획개발비 보조사업 및 영화 초기기획지원, 한국영화시나리오공모전(마켓)등에 선정된 이력이

있는 작품

- 위원회 및 타기관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, 배급사대표, 감독, 개인은 신청불가(프로젝트 참여구성원에도 적용)
- 위원회 및 타 기관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, 배급사대표, 감독, 개인은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가능(프로젝트 참여구성원에도 적용)
- 신청일 현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」 제3조의 8에 의거, 동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(감독이 제작사대표인 경우) 혹은 영화업자 (영화)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, 법 제3조의4(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명시)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원 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(프로젝트 참여구성원에도 적용)
-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.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

## ○ 집행·정산

### 1. 집행·정산

- 지원(보조)금은 별도통장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·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전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함.

### 2. 보조금 집행한도

- 선정자가 법인인 경우 제작사 대표는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.
- 보조금 약정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잔여예산은 환수 조치됨.

### 3. 보조금 정산

- 선정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정산범위 : 위원회 보조금
- 정산기한 : 약정종료일 이내
- 제출서류 : 사업결과물, 결과보고서, 정산보고서, 증빙자료 등 첨부 (\*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)

### 4. 제작환경 개선의무

#### (1) 제작현장 성범죄·성희롱 발생방지 및 예방의무

- 지원대상자(제작자, 프로듀서, 감독, 작가 등 주요 참여자)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확인서(양식 별첨)을 제출하여야 함.
-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도 있으며,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



료 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.

- 지원대상자는 기획개발기간 중 성범죄·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,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(양식 별첨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

○ 지원(보조)금 지급 조건

- 선정자는 기획개발 완성보증을 위해 약정체결 시 지원금 100%에 해당하는 **이행보증보험증권**을 제출해야 함. (**\*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**)
- 지원(보조)금 전용 통장 개설 후 지원금 수령 및 지출
- 약정체결 후 지급

○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

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.
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선정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및 타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해당 지원(보조)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로 다른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(보조)금을 받은 경우(\* 매칭사업 제외)
-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(보조)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
- 선정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(타 연출자 등)
- 선정 시 제출했던 기획내용과 트리트먼트 등이 사전 협의 없이 현격히 다르게 완성된 경우
- 심사과정에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경우
- 기타 지원약정서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

2. 지원(보조)금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

- 지원(보조)금의 결정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경우에 따라 (사)전주영상위원회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자에서 배제하거나 지원(보조)금 또는 간접지원(보조금, 현물지원)금의 교부를 제안할 수 있음.

○ 사후관리

- 선정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
- 지원(보조)금 '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' 선정자의 국세 및 지방세체납, 신용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선정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,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취소함.
- 위원회는 지원(보조)금 상황을 점검하고,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 (필요한 경우 제3자 에게 의뢰)할 수 있음.